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26573			
등록번호	160111-0265739			
상호 ㅇ				
본 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7111호(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 학동)				2011.10.31 변경 2015.05.21 등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npower.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21.04.28 공기
1주의 금액	······································			
	2022.05.03 변경 2022.05.10 등기			
발행할 주4				
	2010.01.25 변경 2010.02.05 등기			
	2021.03.30 변경 2021.04.28 등기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2,000 주 2,000 주	금 10,000,000 원	
보통주식	발행주식의 총수 10,000 주 보통주식 10,000 주 금 50,000,000 원			2010.02.04 변경 2010.02.05 등기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발행주식의 총수 11,111 주			2010.06.15 변경 2010.06.15 등기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2020.06.17 변경 2020.06.2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u>105,000 주</u>			<u>2021.07.28 변경</u>	

1/17

026573

발행주식의 총 그 종류 및 각2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보통주식	93,000 주		2021.07.30 등기
제1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	, .		
주식	12,000 주	급 525,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050,000 주		2022.05.03 변경
보통주식	930,000 주		2022.05.10 등기
제1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	100 000 7	7 505 000 000 01	
<u>주식</u> 발행주식의 총수	120,000 주	금 525,000,000 원	2022.12.24 변경
발생구식의 종구 보통주식	1,062,000 주 942,000 주		2022.12.24 면경 2022.12.27 등기
제1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	942,000 -		2022.12.21 중기
지10기8 기 8 전 전 전 1 년 - 주식	120,000 주	급 531,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098,000 주	<u> </u>	2023.06.16 변경
보통주식 -	978,000 주		2023.06.28 등기
제1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			
주식	120,000 주	금 549,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182,001 주		2024.06.26 변경
보통주식	978,000 주		2024.06.27 등기
제1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	100 000 7		
<u>주식</u>	120,000 주		
제2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 주식	36,000 주		
제3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	30,000		
주식	48,001 주	금 591,000,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1,194,001 주]	2024.07.20 변경
보통주식	978,000 주		2024.07.22 등기
제1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			
주식	120,000 주		
제2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			
주식	48,000 주		
제3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	40.004.7	7 505 000 500 0	
주식	48,001 주	금 597,000,500 원	

1 1 1 1	<u> </u>	
목	적	
· ·	.	
1. 수소 및 연료전지 제조업	<2014.01.20 삭제	2014.01.24 등기>
1.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업	<2014.01.20 삭제	2014.01.24 등기>
1.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업	<2014.01.20 삭제	2014.01.24 등기>
1. 그린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업	<2014.01.20 삭제	2014.01.24 등기>
1. 녹색성장 관련 기술개발업	<2014.01.20 삭제	2014.01.24 등기>
1. 대면적 금속자자체식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셀,	스택 기술 시제품 및 상용호	가게품의 제조업
	<2014.01.20 삭제	2014.01.24 등기>

등기번호	026573					
1. 고체산호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단전지 및 분리판간 결합구조등 개발업					
			<2014.01.20	삭제	2014.01.24	등기>
1. 과학기 (술 연구개발업		<2014.01.20	삭제	2014.01.24	등기>
1.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시	 업 일체 	<2014.01.20	삭제	2014.01.24	
1. 수소 및	연료전지 제조 및	유통, 판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수소 및	연료전지 연구개발	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수소 및	연료전지 서비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수소 및	연료전지 부품,소지	내 제조 및 유통,판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수소 및	연료전지 수출입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수소 및	연료전지 부품,소지	배 수출입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세너지 관련 기술개별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신재생에	너지 관련 제조 및	유통,판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신재생에	너지 관련 서비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너지 관련 기술개발?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그린에니	^{크지} 관련 제조 및 유	구통,판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그린에니	너지 관련 서비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장 관련 기술개발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녹색성?	장 관련 제조 및 유통	통, 판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녹색성장 관련 서비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과학기台	술 연구개발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과학기台	술 연구개발 장치,부	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과학기台	술 연구개발 장치,부	품 관련 서비스업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4] -]	<2014.01.20	추가	2014.01.24	등기>

<u> </u>	임원에 관한 사항			
	전 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35-804			
2012 년 02 월 01 일 사임	2012 년 02 월 08 일 등기			
<u> 감사 임경희 670429-*****</u>				
2012 년 02 월 01 일 사임	2012 년 02 월 08 일 등기			
사내이사 강인용 760615-*****				
2012 년 02 월 01 일 취임	2012 년 02 월 08 일 등기			
2015 년 02 월 01 일 중임	2015 년 02 월 12 일 등기			
2018 년 03 월 29 일 중임	2018 년 04 월 11 일 등기			
2021 년 03 월 30 일 중임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2024 년 03 월 30 일 중임	2024 년 04 월 03 일 등기			
사내이사 배중면 670228-*****				
2012 년 02 월 01 일 취임	2012 년 02 월 08 일 등기			
2015 년 02 월 01 일 중임	2015 년 02 월 12 일 등기			
2018 년 03 월 29 일 중임	2018 년 04 월 11 일 등기			
2021 년 03 월 30 일 중임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2024 년 03 월 30 일 중임	2024 년 04 월 03 일 등기			
감사 나종민 740902-*****				

2012 년 02 월 01 일 취	임 2012 년 02 월	08 일 등기			
	•	12 일 등기			
	•	_ ,			
2018 년 03 월 29 일 중	•	11 일 등기			
2021 년 03 월 30 일 임	기만료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대표이사 강인용 7606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 ³	명 1로 12, 707동 1303호(관평동, 대덕테크노			
밸리7단지아파트)					
2012 년 02 월 01 일 취	임 2012 년 02 월	08 일 등기			
대표이사 강인용 7606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	울2로 134, 106동102호(용산동, 대덕테크노			
밸리 푸르지오 하임1단지아파트	_)				
2012 년 11 월 22 일 주	소변경 2014 년 01	월 24 일 등기			
2015 년 02 월 01 일 중	·임 2015 년 02 월	12 일 등기			
2018 년 03 월 29 일 중	·임 2018 년 04 월	11 일 등기			
2021 년 03 월 30 일 중	·임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2024 년 03 월 30 일 중	·임 2024 년 04 월	03 일 등기			
사내이사 나종민 740902-*****					
2021 년 03 월 30 일 취	임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2024 년 03 월 30 일 중	·임 2024 년 04 월	03 일 등기			
감사 정상필 710911-*****					
2021 년 03 월 30 일 취	임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2024 년 03 월 28 일 중	·임 2024 년 04 월	03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 의결권에 관한 사항

등기번호

02657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 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2)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 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026573

-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배당금과 배당금에 대하여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회사의 청산 시 제1조 제1항의 주식인수대금 원금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회사의 잔여재산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 간에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2) 본건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한다.
- ① 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전체 영업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지적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③ 회사가 단일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해 다른 회사에 의하여 인수 또는 매각되고 이로 인해 본 계약 체결 당시의 발행회사의 주주가 발행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④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 과정에서 소멸 회사가 되고, 위 합병 후 본 계약 체결 당시의 발행회사의 주주가 합병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존속회사(신설회사인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합병 신주(존속회사가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할 경우 존속회사의 자기주식)가 존속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⑤ 회사의 신규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보통주주의 구주 처분(보통주주에 대한 공동 매도권 또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같이 매도되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 매각분도 포함) 및/ 또는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지분증권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 '경영권 이전'이라 함은 주식양수인(신주인수인을 포함)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주식연계증권의 경우, 매각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 행사 또는 교환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 이상을 자기의 계산(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계산을 포함)으로 직 ∙ 간접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거래를 말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주식전환에 관한 사항 >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

026573

- 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 (2) 전환의 청구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 (3) 전환방법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②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④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4) 전환비율 :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하며, 각 호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후 전환 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 ①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②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여기서 IPO에는 코넥스 시장을 포함 하지 않는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④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거나(주권상장법인과의 기업결합은 제외한다) 피인수(회사의 신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회사나 주주가 보유하는 기존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을 포함한 매매, 또는 양자가 결합된 동시 또는 순차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되는 경우, 거래단가 또는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하 '거래단가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거래단가 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⑤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⑥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에 사용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

026573

하다.

- ⑦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⑧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⑨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5)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에 있어 전환가격의 조정 또는 재조정이 행해지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액 또는 재조정액을 즉시 산정하며, 당해 조정 또는 재조정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조정 또는 재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상세히 기재한 증서를 작성하여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제공한다. 우선주식의 주주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i) 조정 및 재조정, ii)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 iii) 그 당시 우선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보통주식의 수와 기타 자산의 양을 명시한 증서를 제공하거나 제공되도록 한다.
- (6)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 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7) 기타 :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 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주식상환에 관한 사항>
- (1) 상환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 (2)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 가능 시점부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3)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 (4) 상환가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 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5) 지연배상금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026573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6) 특별상화권(상화 기간 전 상화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상환에 관한 사항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i)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ii)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iii)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iv)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v)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vi)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② 특별상환권에 따른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연복리 [12]%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경우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위약금 및 본 계약에 기한 회사의 지급의무 있는 모든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우선주식을 회사에게 반환한다.
- ④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특별상환권에 관한 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회사의 책임을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2021 년 07 월 28 일 설정 2021 년 07 월 30 일 등기

제2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2)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 (2)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026573

-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배당금과 배당금에 대하여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 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회사의 청산시 주식인수대금 원금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 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회사의 잔여재산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 간에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2) 본건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① 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전체 영업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③ 회사가 단일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해 다른 회사에 의하여 인수 또는 매각되고 이로 인해 본 계약 체결 당시의 발행회사의 주주가 발행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④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 과정에서 소멸회사가 되고, 위 합병 후 본 계약 체결 당시의 발행회사의 주주가 합병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존속회사(신설회사인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합병 신주(존속회사가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할 경우 존속회사의 자기주식)가 존속회사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⑤ 회사의 신규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보통주주의 구주 처분(보통주주에 대한 공동 매도권 또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같이 매도되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 매각분도 포함) 및/ 또는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지분증권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 '경영권 이전'이라 함은 주식양수인(신주인수인을 포함)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주식연계증권의 경우, 매각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 행사 또는 교환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 이상을 자기의 계산(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계산을 포함)으로 직·간접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거래를 말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

026573

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주식전환에 관한 사항 >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 (2) 전환의 청구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 (3) 전환절차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②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④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4) 전환비율 :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하며, 각 호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후 전환 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 ①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②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여기서 IPO에는 코넥스 시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다 있는 중규의 사제)를 혈행할 경구에는 전환가격는 그 아회하는 혈행가격으로 소장한다. ④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거나(주권상장법인과의 기업결합은 제외한다) 피인수(회사의 신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회사나 주주가 보유하는 기존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을 포함한 매매, 또는 양자가 결합된 동시 또는 순차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되는 경우, 거래단가 또는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하 '거래단가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을 거래단가 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⑤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026573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⑥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에 사용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 한다.
- ⑦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⑧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⑨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5)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에 있어 전환가격의 조정 또는 재조정이 행해지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액 또는 재조정액을 즉시 산정하며, 당해 조정 또는 재조정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조정 또는 재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상세히 기재한 증서를 작성하여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제공한다. 우선주식의 주주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i) 조정 및 재조정, ii)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 iii) 그 당시 우선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보통주식의 수와 기타 자산의 양을 명시한 증서를 제공하거나 제공되도록 한다.
- (6)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 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7) 기타 :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 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 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주식상환에 관한 사항>

- (1) 상환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 (2) 상환조건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 가능 시점부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3) 상환방법 :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026573

- (4)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 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5) 지연배상금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6) 특별상환권(상환 기간 전 상환권)에 관한 사항
- ①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위 (2) 내지 (5)의 규정을 준용한다.
- i)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ii)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iii)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iv)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 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v)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vi)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② 특별상환권에 따른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연복리 12%를 가산한 금액과 실제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위약금 및 본 계약에 기한 회사의 지급의 무 있는 모든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우선주식을 회사에게 반환한다.
- ④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특별상환권에 관한 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회사의 책임을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2024 년 06 월 26 일 설정 2024 년 06 월 27 일 등기

제3종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2)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 (1)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2) 본건 종류주식은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026573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 (2)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 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5) 위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7%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 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 주식전환에 관한 사항 >

-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발행일 익일부터 존속 기간 만료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2) 전환의 청구기간 :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3) 정확절차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전환청구서 2통 및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④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전환조건

026573

- ①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전환비율')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전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i)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보통주식을 발행하거나, ii)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나 회사의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 등'이라 하고, 종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을 발행하면서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으로 이를 발행하거나, iii) 회사가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후 그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조정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발행가격,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 ⑤ 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상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하거나, 주권상장법인(SPAC을 포함한다.)과 합병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상장하는 경우, 공모단가 또는 교환비율 등의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하 "공모단가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할 때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공모단가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⑥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거나(주권 상장법인과의 기업결합은 제외한다.), 피인수(회사의 신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회사나 주주가 보유하는 기존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을 포함한 매매 또는 양자가 결합된 동시 또는 순차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되는 경우, 거래단가 또는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하 "거래단가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할 때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거래단가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⑦ 위 각 호의 사안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격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 ⑧ 전환주식의 수 :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종류주식의 수에 전환비율(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발행가격 / 전환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한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고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구권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5)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 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의 잔여 수권 주식 수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권주식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열람일시 : 2024년09월05일 13시26분16초

026573

- (6)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7) 회사는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격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액 또는 재조정액을 즉시 산정한 후, 해당 조정 또는 재조정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조정 또는 재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당시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보통주식의 수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식상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2)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법 제462 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3)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4)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①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② 본건 종류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③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 ⑤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⑥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2024 년 06 월 26 일 설정 2024 년 06 월 27 일 등기

026573

기 타 사 항

1. 흡수합병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324-11(탑립동) 에이치앤파워에프씨 주식회사를 합병 2021 년 12 월 01 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경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 2021 년 03 월 30 일 변경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 2021 년 03 월 30 일 변경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 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3) 위 1호와 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21 년 03 월 30 일 변경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수 있다.

< 2021 년 03 월 30 일 변경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

열람일시 : 2024년09월05일 13시26분16초

026573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21 년 03 월 30 일 변경 2021 년 04 월 28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09 년 09 월 21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9 년 09 월 21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4년09월05일 13시26분16초